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52
----------	-------

발의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송언석 · 권명호 · 김석기
김용판 · 김정재 · 박덕흠
정진석 · 정희용 · 조태용
태영호 · 한무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정보 제공) ① 은행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평가 항목
2.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3.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4항 중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
2.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은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3(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정보 제공) ①</u> <u>은행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u> <u>각 호의 정보를 해당 은행과</u> <u>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u> <u>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1. <u>평가 항목</u> 2. <u>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u> 3. <u>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u> 4. <u>그 밖에 평가에 관한 정보로</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u> <u>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u>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u> <u>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u> <u>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u> <u>과태료를 부과한다.</u> <u><신 설></u>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자에게는-----</u> <u>-----</u> <u>-----.</u> 1. <u>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u> <u>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u>

<u><신 설></u>	<u>니한 은행</u> 2.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u>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u> <u>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u> <u>니한 은행</u>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